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사건

【결정사안】

1959년 경찰관 시험 합격자 24명과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회원 41명이 이승만 정권의 내무부에 의하여 강압적 또는 기망적 방법으로 재일교포북송저지공작원으로 선발되어 일본으로 밀파되는 과정에서 12명의 공작원들이 조난을 당하고 24명의 공작원들은 도일 후 일경에 체포되고 복역하였음에도 방치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이 사건은 1959년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북송저지공작을 전개키로 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해 일본 현지에 공작원을 파견할 예산을 책정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의 승인과 내무부장관 관할 하에 치안국이 추진하여 실행에 옮겨졌으나, 그 공작원의 선발이 강압적인 분위기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밀항의 방법으로 공작원들을 일본에 파견시키는 과정에서 12명이 조난당하고, 이외 공작원들도 도일 후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2. 선발과정에서 일부 경찰시험응시자들에 대하여는 공작원 임무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경찰에 임용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소집장소에 출석시킨 다음 공작임무를 수행한다는 국가기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임의로 벗어날 수 없다는 강압적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우이동 훈련장소로 이동시켰으며, 학도의용군 출신에 대하여는 동지회를 통해 공작 활동을 할 요원을 선발한다는 막연한 내용만을 알리거나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선발하면서 그 임무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국가기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식의 기망 또는 강압적 방법으로 우이동 훈련장소로 이동시켰다.

3. 우이동 훈련장소에서는 천막을 치고 합숙시키면서 1개월간 외부와 통제된 상태에서 재일동포 설득작업, 조총련 간부 납치 등 불법적 방법에 의한 공작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비밀교육을 한 후, 밀항이라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을 통하여 도일하도록 하였는 바, 무리한 출항으로 12명의 공작원이 조난사고를 당하였으며, 도일한 공작원들 역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생계곤란을 겪다가 그 중 24명이 일경에 의하여 체포, 1년 여 기간

동안 복역한 후 강제송환되었고, 그 가족들은 공작원들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마저 방치당하는 곤란을 겪었다.

4. 기망과 강제적 상황에서 외부와 차단한 채 공작원을 선발하고, 교육장소로 이동시켜 교육을 받게 한 후, 위험한 밀항선에 승선시킨 것은 피해자인 신청인 등 공작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피해자 가족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작활동을 행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공작원들을 일본으로 밀파한 행위는 권력남용에 해당하며, 헌법상 국제평화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5. 국가는 사건발생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공작원들을 강압적으로 공작원으로 선발하여 교육을 시키고 밀파시키는 과정에서 행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구되며, 국가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

【전 문】

【사 건】 라-55 재일교포 북송저지공작 사건

【신청인】 김홍윤

【결정일】 2007. 4. 3.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1959. 9. 초 경찰간부시험 합격자 24명 및 재일학도의용대 출신 41명 등 66명이 내무부 치안국에 의해 재일동포북송저지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서울 우이동 신원사 근처에서 교육을 받고 일본으로 밀파되는 과정에서 12명이 조난을 당하였고, 25명이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밀파 후 지원이 없이 방치된 사건이다.



II. 의혹 사항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대에 관하여는 그동안 일부 언론보도에 의해 간헐적으로 일부 진상이 알려졌을 뿐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공작활동의 주관기관, 공작원 선발 및 교육과정의 강제성 여부, 조난사고, 재일 공작활동 등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대의 실체 및 인권침해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III. 진실규명 조사의 근거와 목적

기본법 제1조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대의 실체, 공작원의 선발 및 교육과정, 밀파과정, 공작활동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국가의 공작원 방치 등 인권침해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어,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 8. 22. 조사개시 의결을 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IV. 조사방법과 경과

1. 자료조사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2002 : 제9장 “재일동포 북송저지대” (이 사건 공작원들의 증언 등을 담은 자료)
- 언론보도
 - 조선일보 1960.5.13.자 1면, 동아일보 1960.7.7.자 1면 : 일본에서의 체포사실
 - 조선일보 1960.12.17 자 3면 : 조난사고사실 폭로
 - 월간조선 1999.3. “비화발굴-재일동포 북송저지공작대 71명의 운명”

- SBS 뉴스추적 2001.8.3. 방영 “잊혀진 비밀공작원-재일동포 북송저지조 71명”
- 일본 요미우리 신문 1959.12.5. 자 7면 : 민단 이인기 일적센터 폭파시도
- 일본 요미우리 신문 1959.12.5. 자 11면 : 북송저지특무대 잠입정보 입수
- 야마구치 지방검찰청 기소장(1960.5.25.), 항소취의서(1560.9.13.)
- 야마구치 고등재판소의 판결통지서(1960.12.28.)
- 나가사키 형무소의 가출옥증서(1961.5.30.)
- 영도경찰서장 명의의 강제송환증명서(1961.6.13.)
- ‘재일동포북송저지공작관계해결의견’이라는 제하의 국무회의 안건록 형식의 문건 (1961)¹⁾
- 1959년 제32회 국회 본회의록 : 재일동포북송반대결의문 등
- 2001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2001.9.13.)
- 제1공화국 국무회의 비망록 : 1000여 쪽
- 1959년~1961년 국무회의록
- 기타 관련문헌 :
『한국경찰사 II』(한국경찰사편집위원회, 내무부 치안국, 1973),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연구』(박진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2006), 『현대한국정치사 강의-건국과 부국』(김일영, 생각의 나무, 2004), 『한권으로 보는 현대사 100장면』(김삼웅, 가람기획, 1994), 『대한민국 50년사 1』(임영태, 들녘, 1998), 『한국현대정치사의 이해』(오명호, 오름, 1999), 『국가보안법 연구 II』(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2. 진술청취

- 생존 공작원 :
김홍윤(2006. 8. 24. 2006. 11. 16.), 조승배(2006. 6. 23. 2006. 8. 17.), 최성규(2006. 11. 13.), 방한기(2006. 11. 8.), 유찬호(2006. 10. 27.), 허명묵(2006. 11. 13.), 박진우(2006. 10. 23.), 전우영(2006. 11. 30.), 신상봉(2007. 2. 21.), 배성현(2007. 2. 26.)

1)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제출자료. 이 자료는 2001. 8. 3. 방영된 SBS 뉴스추적 “잊혀진 비밀공작원-재일동포북송저지조 71명” 이 방영된 후 익명의 제보자가 공작원 급여일람표와 함께 동지회 사무실로 송부해 온 것이다. 국가기록원 보유 1961년 국무회의록 중에서는 같은 문건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국가기록원에 문의한 바 안건을 만들어 놓고 여타 이유로 상정되지 못한 경우일 수 있다고 한다. 문건에서 이전의 정부를 과도정부로 당해 정부를 新정부로 칭하고 있는 바, 1961년 장면정권기 즉 5·16이전에 작성된 문건으로 판단된다.



- 당시 내무부 치안국 관계자 :
김○○(당시 정보5계장, 2006. 11. 18.), 호○○(당시 정보5계 순경, 2006. 12. 19.)
- 기타 참고인 :
진성룡(당시 재일학도의용대 대장, 2006. 12. 28.), 박일순(조난 공작원 김형권의 처, 2006. 11. 19.), 김민규(김형권의 아들, 2006. 11. 19.), 권분두(前 김복섭의 처, 2007. 2. 26.), 이경옥(전 공작원 박덕철의 처, 2007. 2. 15.), 정은주(전 공작원 정인태의 딸, 2007. 2. 27.), 김인식(조난 공작원 이상진의 처, 2007. 2. 26.), 이태임(이상진의 딸, 2007. 3. 8.), 이식운(이상진의 친구, 2007. 3. 9.), 고숙현(조난 공작원 박석정의 제수, 2007. 2. 28.), 한동일(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회원, 2006. 6. 13.), 1959년~1961년 주일대표부 관련자 3명(2007.2.)
- 진술청취가 불가능한 관련자 및 그 사유
 - 당시 치안국장 이강학과 박○○, 이○○는 사망
 - 정보과장 이○○과 회계담당 최○○ 경위는 주민조회 불가능(사망추정)
 - 생존 공작원 김성옥은 건강상의 이유로 면담 불가능

V. 조사결과

1. 시대적 배경

1945년 8·15 해방 무렵 200여만 명에 달하던 재일동포들 중 140여만 명은 해방 직후 대부분 귀국하였으나, 나머지 60여만 명은 타의 혹은 자의에 의해 귀국하지 못한 채 일본에 잔류, 동포 사회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재일한국인에 대해 공공연한 비판을 하였다.

한국은 평화선²⁾을 선포하고 불법 침범하는 일본 선박과 어선들을 나포·억류했고, 일본은 억류된 이들을 송환받기 위해 재일한국인 억류를 협상카드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한일회담의 경과상 한국이 재일한국인들의 귀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고 송환되지

2) 이는 1952년 1월 18일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한국 연안수역 보호를 위해 선언한 해양주권선이다.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선포하였다 하여 '이승만라인' 또는 '이라인(Lee Line)'이라고도 하며, 이 평화선은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한다. 평화선 선포의 배경을 보면, 한일간의 어업상의 격차가 심하고, 어업자원 및 대륙붕 자원의 보호가 시급하였으며, 세계 각국 영해의 확장 및 주권적 전관화 추세에 대응하고, 특히 '맥아더라인'의 철폐에 따라 보완책의 하나로 설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반대반응을 보인 것이 일본이었으며, 그밖의 미국·영국·자유중국(현 타이완) 등의 우방국들도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하였다. 이 평화선은 1965년 6월 한일조약 체결로 사실상 해제되었다.

않은 일본 어부들이 소수라고 판단되자, 재일한국인 중 희망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일본적십자가 60만 명에 달하는 재일한국인이 대부분 귀국을 희망하나 한국이 비인도적으로 이들의 귀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1957년 8월 16일 공식으로 일본정부가 국제적십자사를 통하여 북송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규모로 재일한국인들의 귀국을 허용하겠다고 제의하여 오자

북한은 1957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2,000만엔의 교육원조금을 재일한국인사회에 전달하여 이데올로기를 떠나 ‘고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58년 9월 16일 북한의 남일 외상이 ‘일본으로부터의 귀국자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성명을 통해 재일한국인의 귀국을 공식으로 요청함으로써 北·日 간에 교섭이 시작되었으며, 남일 외상은 12월 30일 ‘귀국 조선인 수송을 책임진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공식 요청을 받은 일본적십자사는 1959년 1월 20일 재일한국인 귀국을 정치문제와 분리, 인도적 문제로 해결할 것을 확인하는 결의를 하고, 1959년 1월 30일 후지야마(富士山) 외무대신이 북송추진을 발표하자 한국은 주일대표부를 통해 일본 외무성에 즉각 구두의 항의를 전달하였고, 1959년 2월 13일 일본 내각이 북송을 결정하자, 유태하 공사는 야마다(山田) 외무차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은 북송을 승인할 수 없으며, 평화선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였고, 또한 한국에 수용 중인 일본 어부들의 송환을 중단하고 한일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다음 날인 14일 주미 공사인 한표옥은 미 국무부를 방문하여 ‘한국은 재일한국인은 한국인이며, 따라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북송은 북한체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로버트슨 국무차관보는 그 자리에서 ‘한국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을 겪으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한국입국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미국은 휴전회담에서 포로들의 자발송환을 지지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간차원에서 북송반대 시위가 일어나 1959년 2월 16일 ‘재일한인북송반대전국대회’가 개최되고, 이기봉, 조병옥, 장택상 3명이 지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대회에서는 장택상 전 국무총리, 최규남 전 문교부장관, 유진오 고려대 총장 등 3명을 3월 7일 제네바로 보내어 국제적십자사와 교섭해 북송문제에의 관여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국무회의에서는 연일 이 북송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³⁾ 국회도 2월 19일 재일한인북송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하고, 이것을 유엔총회 의장·유엔사무총장·6·25전쟁 참전 16개국 정부대표·국제적십자사 대표에게 보냈다.

1959년 4월 13일 제네바에서는 재일한인 북송에 대한 일본과 북한 적십자사간 회담이 시작되고, 미국 또한 6·25전쟁 휴전협상시 포로송환문제에서 자유송환원칙을 주장한 전례를 들어 일본의 이러한 북송결정이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렇게 일본의 북송계획은 미국의 묵인하에 후술하는 바와 같은 한국의 적극적인 반대와 반발을 묵살한 채 진행되어, 1959년 6월 10일 제네바에서 北·日 적십자사간 교섭이 사실상 타결되고, 동월 24일 관계문서가 가조인되었다.

한국정부는 4차 한일회담 중단, 외교경로를 통한 강력한 항의 전달, 대일통상 중단조치(1959.6.15.), 미국에 중재요청,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추진하였다. 그러나 대일통상 중단조치는 오히려 한국에게 불리할 뿐 일본에 대한 압력수단이 될 수 없었던 바 결국 10월 8일 해제되었고, 미국 또한 북송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로 미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며 사실상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위임하자는 한국의 제안은 일본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이 북송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효과적이지 못했고, 이에 한국은 전술을 바꾸어 4차 한일회담의 즉각적인 재개를 요청하여 대응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시점에서 이 역시 효과를 보지 못했다.

1959년 6월 24일 북·일 적십자사가 관계문서에 가조인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재일동포 북송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동년 8월 11일 북한과 일본은 인도 캄커타에서 『북한적십자사와 일본적십자사의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일명 ‘캄커타 협정’)⁴⁾에 정식 조인하였다.

3) 1959년 국무회의 비망록.

4)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영순, “日北의 「귀국협정」 성립과 그 경위: 재일조선인의 북한으로의 귀국” 참조)

- (1) 귀국자의 범위는 귀국을 희망하는 재일조선인(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조선인을 포함)과 그 배우자(내연관계자를 포함) 및 그 자녀, 그 외 그에 부양되고 있는 자로서 함께 귀국할 것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16세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의사에 의한다.
- (2) 귀국신청은 일본적십자사가 정한 양식에 의한 귀국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일적」에 제출(16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소요의 귀국수속을 한다. 귀국의사 변경은 승선전 일정기간까지 허가된다.
- (3) 「일적」은 귀국희망자의 등록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적십자국제위원회에 대하여 귀국희망자의 등록기구의 조직 및 운영이 인도적 원칙에 따라 공정 공평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 동위원회의 조언 및 필요조치 등을 의뢰한다.
- (4) 귀국자의 인도 및 인수는 승선항에서 「일적」 대표와 「조적」 대표와의 사이에 이루어지며, 귀국자 명부와 확인서를 교환함으로써 완료한다.
- (5) 귀국선의 배급은 조선측이 배선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일본측은 新羅港을 귀국자 승선항으로 지정하고, 조선측은 나진, 청진, 흥남의 3항을 하선항으로 지정한다. 또한 귀국희망자의 매회 집결하는 기일 간격은 7일 전후로 하며 매회의 인수는

이러한 가운데 1959년 8월 일본의 소규모 의원단과 운수대신 등이 평화선 해역을 순시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일련의 행동을 ‘도발’로 받아들이는 등 한·일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1959년 10월 30일 경 유태하가 외무부에 보낸 보고서에는 북한이 북송을 추진하는 이유가 한일회담 분쇄, 경제개발계획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 확보, 대내외적인 선전효과를 통한 북한체제를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북송에 대한 한국의 문제제기에는 체제경쟁이 개재되었다는 점은 분명했고, 이승만도 북송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첫 북송선이 출발하기 전일인 1959.12.13. 이승만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군을 경계태세로 전환시켰던 바,⁵⁾ 소련 측에서는 이승만이 무력적 대응을 할 경우에 대해 경고를 하기도 하였다.⁶⁾ 또한 1959년 12월 14일 첫 번째 북송선이 출발하자 한국정부는 북송이 중단될 때까지 ‘거족적 항쟁’을 지속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지만, 당시 한국은 북송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이 없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송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들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1959년 12월 서울수도방위사단 사령부 고급부관(대령계급)이었던 김구 암살범 안두희가 1959년 오사카에 파견되어 경무대 기관원이었던 위혜림, 나카지마 등과 함께 북송선 폭파

약 1천명으로 예정한다.

(6) 귀국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있어서

- ① 「일직」은 귀국자가 거주지를 떠나 집결지까지의 운송비, 식비, 60킬로그램(귀국자 1인당)까지의 화물 운송비 및 응급 의료비와 집결지에서 승선까지의 숙박, 식사, 응급 의료비 및 수송을 제공한다.
- ② 귀국자는 1인당 일본의 통화 4만 5천 엔까지 영국파운드 수표로 휴대할 수 있으며, 상기한도를 넘는 일본 통화를 소유한 자는 본인 명의로 일본은행에 예금하여 후일 본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일본법령에 따라 외화로서의 인출이 인정된다. 주식공채등의 증권 및 예금통장등의 휴대는 불허한다.
- ③ 귀국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여행휴대품, 이사회물 및 직업용구로 한다.
- ④ 일본측은 귀국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일체의 재산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⑤ 일본측은 귀국자가 사정에 의해 가져갈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계속 본인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 ⑥ 조선측은 귀국자가 승선한 이후의 운송 및 식사, 숙박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의료상의 복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귀국자의 귀국 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 직업, 취업 등 일체의 조건을 보장한다.

(7) 귀국선에는 「북적」 대표가 승선하여 귀국선의 승선항 정박중 그 항역 내에 체제하며 귀국자의 인수, 연락 및 귀국자의 귀국 협력을 담당한다.

- (8) 「일직」은 본 협정의 내용 및 귀국 수속 등을 가능한 한 출판, 보도수단을 사용하여 재일조선인에게 철저한 주지를 도모한다.
- (9) 협정의 유효기간은 조인날로부터 1년 3개월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귀국사업이 완료 불가능으로 인정될 경우는 협정기간 3개월 이전에 일조양적십자단체 협의상 협정을 그대로 혹은 수정 갱신할 수 있다.

5) 연합뉴스 2005.6.16. <과거의 창으로 본 오늘의 북한> ⑥재일동포북송, 이 기사는 미 우드로 윌슨센터 냉전국제사프젝트(CWIHP)가 옛 소련과 동구권, 중국 등 과거와 현재의 공산권에서 수집, 분석연구하고 있는 각종 기록 가운데 북한관련 기록을 모은 '뉴 에비던스(New Evidence)'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6) 1959년 12월 14일자 『동아일보』 1면 참조.



공작을 벌이다 그 정보가 누출, 『주간 요미우리』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한다.⁷⁾ 이는 외교적 노력 등이 효과가 없자 이승만 정부가 선택한 또 다른 대응 방법의 일환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작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후 북송선의 출발로 중단되었던 한일회담은 1960년 억류자 상호석방, 한국 쌀 3만 톤의 일본 수출 등을 협상하면서 회담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4월 15일 회담이 재개되어 양국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 제 현안들의 타결 기미가 보였지만 4·19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중단되었다.

1959년 12월 14일 첫 번째 북송선이 975명의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니가타항을 출발했다. 이를 필두로 1959년 12월 2,942명이 북송선을 탔고, 1981년 9월 27일까지 모두 185회에 걸쳐 9만 3천 314명이 북한으로 갔다. 특히 1960년과 1961년 2년에 걸쳐 7만 2천여 명이 북송길에 올라 전체 북송자의 77.4%에 달했다.

2. 북송저지공작대의 실체

가. 실체 여부

공작원 선발 및 교육, 그 주관기관 및 비용의 출처 등 재일동포북송저지공작대(이하 북송저지공작대)의 실체(實體) 확인을 위해, 생존공작원들과 당시 치안국 정보5계 담당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당시 관련 신문기사,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지방검찰청 시모노세키(下關)지부의 공소장 및 공작 관련 국무회의 안건록 형식의 문건 등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일본 정부가 재일동포들의 북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북송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한국 정부가 북송을 저지하는 공작원들을 일본에 밀파하였다는 내용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것은 공작원들이 일본 현지에서 체포된 후의 일이었다.

즉, 동아일보는 1960. 7. 7. 자 1면 “일경서 24명 체포-북송반대 위해 밀항한 한국청년”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북송반대투쟁 관계의 단원이라고 자백한 24명의 한국인들이 5일 밤 한국으로 밀항하다가 하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경찰보도는 ‘신단덕’⁸⁾에 의해서

7) 현대사발굴, 『공작원 안두희와 그의 시대』, 정병준, 162~164쪽.

8) 24명의 공작원에 대한 야마구치현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지원의 판결문과 『재일동포 6·25참전사』의 명단을 확인한 바, 이는 신은득(申殷得)의 오독으로 판단된다.

인솔된 동단원들은 1959. 11. 먼저 체포되었던 다른 10여 명의 단원들과 함께 일본으로 밀입국하였던 자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반공청년단원들로부터 선발되었으며, 4월 혁명 후 귀국하도록 소환되었으나 돌아갈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도하여 사건의 일단이 한국에 알려졌다.

그 후 1960. 12. 17. 자 조선일보 3면에는 “수십 명 수장됐다. 이정권 때 북송저지공작원 밀파타가” 제하의 기사에서 “민의원 현석호(玄錫虎) 의원은 16일 광주에서 ‘재일교포북송저지’를 위해 일본에 공작대원으로 밀송되던 고학생 수십 명이 현해탄에서 익사했다고 폭로했다. 현의원은 당시의 자유당정권에서 일본의 재일동포북송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2억 환의 자금을 대고 밀송시켰는데, 그 중 수십 명이 현해탄에서 조난사망하였다고 밝히고”는 내용으로 자유당정권이 1년 전 재일동포의 북송을 저지하려고 공작원을 밀송하는 과정에서 선박이 조난당한 사건을 보도하였으나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잊혀져 오늘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이 이승만 정권 시절 재일동포북송저지공작대 파견의 실체는 일본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공개되었으나,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허정 과도내각에 이어 장면 내각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잊혀졌다.

나. 주관기관

진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자료의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1961년 내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일교포북송저지공작 관계해결의견』(이하 국무회의 안건)은 주문에 “재일교포북송저지공작 관계해결 비용으로 예비비 항목에서 일금 2천 8백만 환정을 지불키로 결의한다”, 제안이유에 “단기 4292년(서기 1959년) 7월경 일본정부의 재일교포북송 강행기세가 점속하자 당시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의 의결로서 현지에 공작원을 파견하여 북송저지공작을 전개키로 하여 총예산 약 2억 환을 계상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일금 7천만 환을 영달하고 그 후 중단된 관계로 공작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비용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또한 위 문서에 첨부된 『재일교포북송저지공작경위보고서』(이하 경위보고서)에서 그 동기, 목적, 응모자처리, 공작상황(주원확보, 교육, 수송, 공작대의 활동상황, 철수, 사고발생), 현황(공작원의 동태, 순직공작원의 처리, 가족생계부조비, 귀환공작원의 처리, 잔류공작원의 처리, 재일피검공작원 처리), 예산 및 집행, 해결책, 공작원 동태표 등 비교적 상세한 현황을 기재하고 있는 바, 1억 9천만 환의 예산이 책정되어 7천 8



백만 환이 집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북송저지공작 실무는 당시 치안국 정보5계에서 진행한 것인 바, 1948. 11. 4. 대통령령 제18호로 공포된 내무부직제상 대공관련 업무는 치안국 사찰과의 직무로 규정되었는데, 1954년 정보과로 명칭이 바뀌었다.⁹⁾ 당시에는 중정과 같은 별도의 정보기관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과의 역할이 계속 확대되어, 1957년 특수정보과의 직제는 중앙분실인 정보4계와 특수공작업무를 담당하는 정보5계¹⁰⁾를 포함하여 총 5계로 확장 개편되었다¹¹⁾.

경찰청 인사기록 조회 결과 이○○, 박○○, 호○○가 1959년 치안국 특수정보과에 근무하였고, 당시 정보5계장은 김○○이었음을 확인하였다.¹²⁾ 그러나 이강학과 위 이○○, 박○○은 사망하여,¹³⁾ 김○○과 호○○의 진술만 청취할 수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위 김○○은 “당시 반공청년단장인 국회의원 ‘신도환’¹⁴⁾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북송저지사업비로 1억 환을 받아 그 중 9천만 환을 ‘최인규’ 내무장관에게 주었고, 이강학 치안국장이 이를 받아 북송저지공작에 사용하였고, 비용 지출이 있을 때마다 경리업무를 맡았던 최○○ 경위¹⁵⁾가 지출공문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아 지출하였다”, “북송저지공작은 치안국장 이강학의 지시에 의하여 정보5계에서 진행된 것이며, 나는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실무적인 지원이나 교육은 이○○가 담당하였다. 이○○가 공작관련 보고를 하면 내가 이를 정보과장인 이○○에게 보고하였고, 이○○이 다시 국장인 이강학에게 보고하였으며,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치안국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정보5계 소속의 순경 호○○는 “정보5계에서 이 사건 공작을 진행하였으며, 적어도 내가 아는 한도에서는 분실(4계)이나 다른 계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재일학도의용군(이하 학도의용군) 대장 출신 진성룡은 “1959년 여름 치안국에서 사람이 찾아와 내무부장관 최인규, 차관, 치안국장 이강학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로부터 ‘조총련

9) 「국가보안법연구 Ⅱ」, 박원순, 역사비평사, 515쪽 참조.

10) 1959년 당시 정보5계장이었던 참고인 김○○은 정보5계가 대공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 「한국경찰사 Ⅱ」, 1,159~1,160쪽.

12) 2006. 9. 23. 경찰청인사기록조회회신(인사과-6535)으로 당시 이○○, 박○○이 치안국 직원이었음을, 2006. 12. 12. 경찰청인사기록조회회신(인사과-8279)으로 김○○이 당시 정보5계장, 호○○가 특수정보과 순경이었음을 확인하였다.

13) 2006. 10. 31. 행정자치부 주민조회결과 조회 불가.(주민제도팀-6495)

14) 辛道煥(1922. 5. 25.~ 2004. 3. 24.), 1958년 제4대 민의원에 당선하여 정치에 입문, 1959년 대한반공청년단 총본부 단장을 지냄.

15) 2006.11.29. 경찰청 인사기록상 당시 정보5계 경위로 확인(인사과-7920) : 2006.12.18. 행정자치부 주민조회결과 조회 불가(주민제도팀-6495)

등이 감언이설로 복송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없다. 국무회의에서 손을 써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를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논의 끝에 내무부에서 해야 할 일로 되었다. 일본에 가서 저지도 하고 내용도 알리고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일본에서 나고 생활했으니 학도의용군들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니 한번 더 애국을 하여 주시오'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 복송저지공작은 1959년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국무회의의 의결로 일본 현지에 공작원을 파견하여 복송저지공작을 전개할 예산을 책정하여 내무부장관 관할하에 치안국장이 주관하여 추진, 실행되었다.

3. 공작원 선발 및 교육과정

내무부 치안국에서 주관한 공작원 선발은 두 갈래로 진행된 바, 경찰시험합격자 중에서 24명, 학도의용대 중에서 41명을 선발하였다. 위 국무회의 안전 경위보고서에 의하면 예비역장교 1명이 더 있어 모두 66명이다.¹⁶⁾

가. 선발과정

1) 경찰관시험합격 출신

경찰관시험 합격자 출신 24명이 공작원으로 선발된 과정을 보면, 1959년 봄 경찰간부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통지를 기다리던 중 개별적으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방문이나 우편을 통하여 1959. 9. 2. 아침까지 서울 을지로 3가 소재의 황금여관¹⁷⁾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황금여관에 도착하여 정보5계 호○○의 안내로 을지로 4가 부근의 '시청각교육소'¹⁸⁾ 간판이 붙은 2층 적산가옥으로 안내되어 박○○ 등으로부터 일본어 능력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개별면접을 받았다. 면접과정에서 모종의 공작임무 수행을 감지하였으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어서 자유로이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응해야 하는 강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6) 생존공작원들은 총 공작원 수가 66명으로 3개 소대로 나뉘어 있었다고 기억하나, 재일학도의용군측과 경찰간부시험합격자 측은 각각 41명, 24명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는 바, 총수는 65명이다. 또한 익명의 제보자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측에 보내온 급여일람표와 국무회의록 안전록에 의하면 총 공작원 수는 66명인 가운데, 공작원들이 기억하는 바와는 달리 공작대에 '유부형'이라는 자가 포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급여일람표상에도 양측에 속하지 않는 '圃'이라는 표시와 함께 '유부형'의 이름이 있다. 그러나 공작원들은 유부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유부형'의 파견 여부는 현재 확인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66명의 명단 중 재일학도의용군 출신 41명의 명단은 『재일동포 6·25참전사』374쪽의 명단과 일치한다.

17) 해당 지구 지구대에 문의하여 을지로 3가 구역 내에 '황금장'이라는 여관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8)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시 방한기는 '시청각교육원'으로, 배성현은 '교육원 같은 곳'이라고 진술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시 김홍윤은 부산 서대신동 사찰계 형사의 방문으로, 방한기는 치안국 명의로 발신된 우편엽서를 통하여, 전우영은 거주지인 ‘유곡’주재소 순경의 방문으로 황금여관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면접과정과 관련하여 호○○는 “1959. 9. 2. 을지로 3가의 황금여관으로 소집된 경찰관 시험 합격자들을 공작원으로 선발하는 면접절차의 진행을 맡았으며, 박○○이 당시 이들에 대한 면접관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김홍윤은 “면접 도중 일본으로 가는 모종의 공작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면접관 박○○에게 ‘일본으로 가는 공작사업이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갈 수 없겠다’고 하였지만, 박○○은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다. 이미 국가 1급 비밀을 알게 된 것인데 어떻게 그냥 내보내 주겠느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배성현은 “심사자가 ‘베트남으로 가는 공작인데 공무원 신분으로는 국제관계도 있고 하여 곤란하니 반공청년단 신분으로 가야 하며, 매월 경위급의 월급과 귀환 후 경찰관임용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였고”, “정보학교를 마쳐 이러한 비밀공작 관계의 경우 거절하면 형무소 같은 곳에 격리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체념하고 목숨을 바치게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방한기는 “훈련장인 우이동에 가서야 재일동포복송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는 특수공작임무를 위해 모인 것이며, 이 곳에서 훈련을 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경남경찰국 사찰과 형사였던 이식윤은 “당시 부산지역 국회의원 조봉순에게 부탁하여 이상진에게 북송저지경찰관 자리를 주선하였던 바, 그를 사지(死地)로 몬 것 같아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진술하였다.

2) 재일학도의용대 출신¹⁹⁾

학도의용군 출신자들은 경찰관시험 응시자들과 다른 절차를 거쳐 선발되었다. 1959년 여름 내무부장관 최인규, 차관, 치안국장 이강학 등이 재일학도의용군 대장 진성룡을 만나

19) 재일학도의용군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이들로, 한국전쟁에 참가하였다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일본으로 귀환이 어렵게 되자 한국에 남아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를 결성하고, 미군부대 등에서 경비관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및 2006.8.17.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시 조승배 진술 참조). 당시 자유당은 국민회, 대한별공단, 반공청년회 등 각종 우익단체들을 일괄적으로 대한반공청년단으로 통합하고 그 총재로 이승만을 앉히는 등 치안국 같은 공식 기구뿐만 아니라 유사사회단체에 대한 영향력도 공고히 다졌다(김일영, 『건국과 부국: 현대한국정치사상의』, 2004, 227쪽 참조).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역시 자의와 관계없이 대한반공청년단으로 편성된 상태였던 바 치안국은 손쉽게 이들을 그 공작대로 흡수할 수 있었다.

‘조총련이 감언이설로 복송을 유도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수 없으니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내무부 주관으로 일본에 가서 저지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일본에서 나고 생활한 학도의용군들이 적합하므로 나라를 위해서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요청을 받은 진성룡은 “치안국장, 정보과장, 외사계장 등과 여러 차례 만나 공작원들의 신분보장, 가족생계 지원, 귀환 후 경찰관 임용이라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공작원 선발에 협조하게 되었고, 재일학도의용대 회원들에게 공작원 선발 사실을 알려 원하는 이들은 지원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치안국 정보5계 김○○은 “일본에 연고가 있고 일본을 잘 아는 이들을 찾아보니 학도의용군에서 선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지원과정 및 임무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시 박진우는 “1959년 여름 동지회 사무실을 통하여 치안국에서 공작원을 선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하였고”, 허명묵은 “공작 내용은 알았으나 주관부서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최성규는 “자세한 내용은 몰랐으나 일본으로 가게 되는 일이란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유찬호는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 없이 집으로 방문한 치안국 이○○²⁰⁾를 통해 공작대로 선발되어 우이동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며,

조승배는 “인천의 미8군에서 경비관계 책임자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1959. 9. 초경 치안국 정보5계 요원인 이○○가 모 기관에서 나왔다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가자고 하였고, 중요기관에서 나왔다는 말에 따라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차로 명동 중앙국립극장 뒤 특수 분실 같은 곳으로 이동되었는데, 그곳에서 치안국 사람인 듯한 이로부터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일할 의사가 있느냐? 나라의 특수한 일을 하게 되는데 임무가 좀 크다’는 제의를 받았다. 가족과도 상의하고 생각하여 보겠다고 하였으나, ‘가족에게 상의하고 말고 없이 여기서 결단을 내려라. 만일 거절하면 당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특수한 곳에 격리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제의를 수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조난당한 김형권의 처 박일순은 “1959년 여름 미군부대에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근무시간 중에 집에 와서는 ‘일본에서 이북으로 가는 사람들을 막는 복송공작대원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고 나간 뒤 3개월 정도 후에 다시 잠깐 들렀다 갔고, 부산인가 하는 곳에서

20) 경찰청 인사기록상 치안국 특수정보과 직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생존공작원들은 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장애인이었던 바, 자신들을 통솔하던 이가 ‘다리를 절름거렸다’고 하여 이○○로 판단된다.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고 이후 소식이 끊겼다”고 진술하였다.

나. 교육과정

1) 교육장소

공직원들은 면접 후 군용차량을 타고 우이동 신원사 근처의 훈련장에 도착하여 훈련을 받았는 바, 방한기와 허명목 등은 우이동 훈련 당시 촬영한 소대원들의 단체사진을 소지하고 있고, 김홍윤과 조승배는 그 사본을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하였다.²¹⁾ 야마구치 지방 검찰청 시모노세키 지부의 항소이유서에서 체포된 공직원들은 1959. 10.경부터 약 1개월간 서울시 부근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훈련장소로 이동경위에 대하여 경찰시험 출신 김홍윤, 방한기, 전우영은 면접을 통과한 24명이 황금여관에서 바로 우이동 소재의 훈련장²²⁾으로 이동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방한기는 면접에서 탈락한 두 세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커튼이 쳐져 밖이 보이지 않는 군용지프에 태워져 우이동으로 이동, 도착해 보니 이미 24인용 군용천막이 쳐져 있었고, 며칠 후 학도의용군 출신 40여명이 왔다고 진술하였고,

학도의용군 출신 조승배는 공작 제의를 받은 날 그 자리에서 바로 밖이 보이지 않는 엠블런스에 실려서 가보니 우이동 골짜기였고, 이미 다른 재일학도의용군 동료들과 경찰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훈련시설에 대하여 학도의용군 출신 최성규, 유찬호, 허명목 및 정보5계장 김○○은 우이동 신원사 근처의 훈련장에서 공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3개 소대로 나뉘어 각 소대별로 군용천막 하나씩에 기거하며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김홍윤은 치안국의 박○○과 이○○가 신원사에 마련된 본부에 머물렀고 치안국장 이강학이 온 적도 있었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시찰 정도 하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2) 교육내용

공직원들은 군복으로 갈아입고 교육을 받았는바, 먼저 책을 정해서 그 책의 페이지와 글자를 적어 보내는 안착신호 방법을 배웠는데, 초보적인 수준의 것이었고, 일본어와 정세

21) 2006.9.5. 조승배 제출자료, 2007.1.17. 김홍윤 제출자료. 김홍윤은 자신의 소대의 단체사진에서 얼굴을 기억하는 이들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주었다. 김종기, 백남단, 김인주, 장용관, 유상규, 곽종복, 이상진, 방한기, 손진석, 정임현, 이우성, 김덕장, 정인태, 배성현, 고시철, 박석정, 김홍윤, 박문기, 강병련, 전우영. 진중근 21명을 확인하였는 바, 나머지 세명이 김종식, 김진태, 장영문으로 보인다.

22) 생존공직원들과 정보5계장이었던 김○○이 훈련장 장소를 우이동으로 기억하고 신원사가 가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파악 교육, 일본경찰에 들키지 않도록 신분을 잘 숨기는 교육을 받았다.

방한기는 “입고 간 옷을 다 벗기고 군복을 입혔고, 암호교육으로 안착신호 보내는 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안착신호는 책을 정해서 그 책의 페이지와 글자를 적어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암호방법치고는 아주 초보적인 것이었다. 교육은 치안국의 박○○, 이○○와 전향공무원 김○○가 담당했다”고 진술했다.

공직원들은 가명을 쓰도록 하여 김홍윤은 김석천, 유찬호는 ‘요시무라’라는 가명을 받았고, 조승배는 ‘마츠시다’, ‘최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3) 공작임무

조승배는 ‘레포(비밀세포망원)’ 임무를 부여받았고, 박진우는 “고베지구 조총련 간부 납치가 임무였고, 조총련 간부의 명단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고베항 근처에 재일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어 식당에서 만나는 동포들에게 물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며,

방한기는 조총련 의장 한덕수를 납치하라는 임무를 받았으나 관련된 사전 정보 등이 전혀 없어 한덕수의 얼굴도 모르는 채 갔으며, 유찬호는 조총련에 가입하여 일본 적십자사의 복송 추진 업무를 저지하라는 임무를 받았고,

김홍윤과 최성규는 일본에 가 있으면 지시를 주겠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4) 외부통제

공직원들은 우이동 훈련장에 도착하여 천막에서 생활하며 1개월 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장을 떠나거나 외부와 연락이 일체 허용되지 않은 강압적 상황에서 비밀리에 교육을 받았다.

배성현, 방한기 등은 선발에서 교육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족 등 외부와 접촉이 일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들은 행방불명되었다고 생각하고 백방으로 찾아다니는 등 고통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다. 소결

이승만 정권은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내무부 치안국 주관으로 재일한국인 복송저지를 목적으로 일본에서 공작활동을 할 공직원을 선발하여 교육을 시켰다.



선발과정에서 경찰관시험에 응시한 자들에 대하여는 공작원 임무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경찰에 임용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소집장소에 출석시킨 다음, 공작임무를 수행한다는 국가기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임의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여 강압적인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우이동 훈련장소로 이동시켰으며,

학도의용군 출신에 대하여는 동지회를 통해 공작활동을 할 요원을 선발한다는 막연한 내용만 알려거나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선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그 임무에 대해 제대로 알려 주지 않거나 국가기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식의 기망 또는 강압적 방법으로 우이동 훈련장소로 이동시켰다.

교육과정에서 우이동 훈련장소에 군용천막을 치고 합숙시키면서 1개월간 외부와 통제된 상태에서 주로 불법적인 공작활동 실행을 위한 비밀교육을 받았는 바,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권한을 남용하여 기망과 강제적인 상황에서 외부와 차단한 채 선발하고, 교육장소로 이동시켜 교육을 받게 한 것은 신청인 등 공작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가족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4. 밀파 과정

가. 마산 등으로 이동

김홍윤, 방한기, 전우영, 배성현, 최성규, 유찬호 등의 진술에 의하면 공작원들은 교육을 마친 1959. 11. 중순경 10여 명씩 조를 나누어 치안국 이○○ 등의 인솔하에 기차로 마산 등지로 이동하여 치안국 박○○, 이○○ 등과 함께 적산가옥이나 여관 등에서 합숙하며 치안국에서 일본으로 밀항할 선박을 마련할 때까지 대기하였다.²³⁾

나. 밀파 경위

위 국무회의 안건 별첨보고서, 일본 시모노세키 지방법원 판결문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치안국은 공작원들을 조별로 나누어 7차례에 걸쳐 선박에 태워 일본 항구로 밀항시켰다.

1차로 1959. 11. 1. 경 제1조 이종범 등은 부산에서 밀선에 승선하여 11. 3.경 히로시마

23) 도일시 승선한 배가 밀선이었던 점에 대하여 조승배는 “일본을 왕래하는 밀수선으로 인하여 당국이 골치를 앓던 때에는, 치안국에서 이러한 밀수선을 적발하여 선박 몰수를 면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공작원들을 밀항시키도록 포섭하였다”고 하였고, 최성규, 박진우도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현 오미치항에 도착하였다.

2차로 1959. 11. 10.경 제2조 박연규, 안인철(가명 안순철), 김성욱, 조승배, 김종만, 김복섭, 장정부, 허명묵, 신은득, 김태윤 등은 감포항에서 무역선 제21 칠대양호에 승선하여 11. 12. 경 후쿠오카현 오쿠라항에 도착하였다.

3차로 1959. 11. 29.경 제3조 박덕철(가명 박덕길), 박진우, 김의경, 김재하, 김덕장, 진중근, 김종식, 박문기, 손진석, 정광묵, 김성모, 김영은 등은 부산항에서 무역선 제3 대영호에 승선하여 12. 4.경 고베항에 도착하였으나, 경찰에 적발되어 박덕철, 김재하만 탈출하여 상륙하였고, 나머지 10명은 선박에 머물다가 1960. 2. 6. 귀환하였다.

위 국무회의 안건 별첨보고서에는 “제3차 수송선 제3 대영호 탑승공작원이 상륙 예정이었으나, 일본 관헌의 경계가 삼엄하므로 상륙이 불가능하여 12명 중 2명만 탈출 상륙하고 잔여 10명은 1960. 2. 6. 마산항을 경유 귀환하였다”고 적고 있다.

4차로 1959. 11. 30.경 제4조 정영달(가명 심영천), 최성규, 이규달, 차용문, 신상봉, 이동규, 이광락, 유창화, 유찬호 등은 마산항에서 선명미상 선박에 승선하여 12. 1.경 히로시마현 쿠레항에 도착하였다.

5차로 1959. 12. 12.경 제5조 곽종복, 유상규, 방한기, 김홍운(가명 김석천), 전우영 등은 마산항에서 선명미상 선박에 승선하여 12. 14.경 쿠레항에 도착하였다.

6차로 1959. 12. 13. 제6조 김진태, 한운표, 김형권(가명 김형곤), 김인주, 노병렬, 전태인, 장영문, 김진수, 박석정, 천덕표, 이상진, 배수만 등은 거제 출발 수송선 명성호에 승선하여 12. 21. 남해 해상(큐슈 근해 20천 지점)에서 조난당하였다.

7차로 1959. 12. 24.경 최재중(가명 최재판), 강병연, 송두경, 배성현(가명 배종용) 등은 마산항에서 선명미상 선박에 승선하여 12. 26.경 쿠레항에 도착하였다.

밀항 및 도착 경위에 대해 생존 공작원들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차로 승선한 조승배는 “마산에서 배를 구하지 못하여 다시 감포로 가서 배를 탔다”, “현해탄을 지나는데 배가 금방 물 속에 들어갈 것 같았다. 어렵사리 일본 큐슈에 오쿠라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진술했고,

허명묵은 “정식 입국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에 은밀히 오쿠라항에 배를 대자마자 바로 흩어져서 각자의 임무수행지로 도망했다”고 진술하였다.

3차로 승선하였으나 안착에 실패한 박진우는 “우리 배의 사무를 보던 장모 사무장이 일



본 출입국관리직원들과 잘 아는 사이라 입국절차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다“, “작은 어선이라 아슬아슬했다. 고베에 도착하기 전 큐슈와 시모노세키로 들어가는 관문에서 일본 해양경찰대에 추적을 당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우리는 치안국으로부터 ‘반공청년단’ 명칭을 쓰도록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반공청년단인데 해양훈련차 나왔다가 일본 쓰시마가 좋은 관광지라고 해서 보고 가려고 한다’고 하여 상황을 모면하고, 고베항에 도착했지만 안착에 실패, 장모 사무장이 일본 출입국관리소에 이야기해서 20시간 또는 30시간 조건으로 간신히 상륙허가를 받아 잠깐씩 육지에 들어와 일을 보곤 했다. 안착실패 보고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별다른 지시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차로 승선한 공무원 유찬호는 “이틀간 항해하다가 쓰나미가 일어 할 수 없이 다시 마산인가 부산으로 새벽에 돌아왔는데, 해양경찰대가 수상히 여기고 총을 겨누었으나 공작대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어 치안국에 확인해보라고 했다. 그 쪽에서 치안국에 확인한 후 다시 항해하도록 했다. 단속을 피해 새벽 2~3시경에 히로시마 쿠레로 갔다. 간신히 배를 대고 내려보니, 그 바로 앞이 큰 조선소였다. 조선소 불이 너무 밝아 나오지 못하고 숨어 있다가 조선소 직원인 것처럼 하고 조선소를 빠져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최성규는 “우리 목적지는 ‘히로시마’였다. 그런데 출항해서 얼마 안 가 태풍을 만나는 바람에 4~5시간 만에 대마도에도 못 미쳐 돌아와야 했다. 영도에서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다시 출항하여 히로시마로 갔고, 이목이 뜬 틈을 타 배에서 내려 각각 흩어졌고 나는 오사카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5차로 승선한 전우영은 “이○○가 배를 구했는데 배 밑에 열 명 정도 탈 수 있는 밀항선이었으니, 뒤집히면 다 죽는 것이었다”고 하였고,

김홍윤은 “치안국 요원들이 마련해 준 가짜 선원증을 가지고 배에 탔다. 공무원 6명과 다른 밀항자 2명, 선원 네다섯 명 정도 탔다. 5톤 트럭 짐을 실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배였는데 고철을 실었다. 치안국 박○○과 이○○가 수송선까지 함께 탔는데 박○○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사지로 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나도 배에 탈 당시에는 ‘죽으러 가는구나’라는 체념적 심정이었다”, “30시간 정도 항해하여 아침에 쿠레항에 도착하였으나,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배 밑창에 숨어 있다가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방한기는 “12월 10일 출항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고 12월 12일에 다시 출항하였다. 선원증을 만들어 주기에 가지고 다녔지만, 가짜 선원증이니 공해상이나 일본 영해에서는 통

하지 않았다”, “배 밑에 숨어서 항해하였고 일본 쿠레 항구에 도착하여 몰래 육지로 빠져 나와 쿠레 역으로 가서 각자 흩어졌다”고 진술하였다.

7차로 승선한 배성현은 “먼저 마산으로 이동한 후 밀선이 마련되길 기다렸는데, 파트너인 강병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원래 타려던 배를 못 타고 그 다음 배를 탔다. 작은 어선이라 겨울에 파도가 일고 위험하였으나 다행히 쿠레에 도착하여 몰래 육지로 잠입하여 여관에서 하루 자고 강병연과 도쿄로 갔다. 이후에 원래 타려 했던 배가 조난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

치안국은 공작원들을 우이동에서 교육훈련시킨 후 기차를 이용하여 마산, 부산, 감포 등지로 이동시키고, 일본으로 밀항시킬 밀선을 마련하는 동안 외부와 통제된 채 항구 근처의 적산가옥이나 여관 등에서 1개월 가량 합숙, 대기시켰고, 가짜 선원증을 만들어 주면서 적발될 경우에는 대한반공청년단 소속으로 속이도록 지시하였고, 일본의 연고지별로 6~12명 씩 조를 나누어 밀선에 승선시켜 순차적으로 밀입국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일시켰는 바,

선발 및 교육훈련 과정에서 강압적인 상태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강제적인 상황에서 위험한 밀항선에 승선시킨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신의 자유 및 가족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작활동을 행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공작원들을 일본으로 밀파한 행위는 권력남용에 해당하며, 헌법상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²⁴⁾

5. 밀파 이후의 상황

조난사고나 일본에 도착한 후의 사태들은 한국의 주권과 정권 관계자들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발생한 과실 또는 부작위에 의한 피해부분에 해당하나, 강제적인 방법에 의한 밀파 등 선행된 위법·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인 만큼, 포괄적인 진실규명을 위해 그 실상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4) 1959년 당시 헌법 전문에는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라고 되어 있다.



가. 조난사고 발생

1959. 12. 13. 공작원 12명이 거제에서 제6차 수송선 명성호에 승선, 출항하였다가 12. 21. 남해 해상에서 조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국무회의 안건 경위보고서에는 “제6차 수송선 명성호는 1959. 12. 13. 공작원 12명을 탑승시켜 거제 출발 후 일단 대마도에 정착하였다가 재출발하여 일본으로 향하던 중 동년 12. 21. 구주 근해 20천 지점에서 돌풍으로 조난, 선박 전파로 공작원 12명은 선원 5명과 공히 전원 순직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정보5계장 김○○은 “조를 나누어 배를 탔는데 밀선에 태웠다. 그런데 그 중에 16명(김○○의 기억)이 탄 배가 태풍을 만나 가라앉으면서 승선한 공작원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좀 나중에 언젠가 선거철이었는데, 내무부장관이었던 현석호²⁵⁾가 선거유세를 하면서 폭로하여 신문에도 났다”고 진술하였다.

조승배는 “후에 이들의 소식을 알 수 없어 공작원들이 계속 문자 치안국 요원인 이○○가 ‘대마도 기상청에서 폭풍이 심하다고 경고했음에도 공작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출발하였다가 조난당하였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치안국 요원 1명도 함께 승선했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김홍윤은 “일본신문에서 풍랑을 만나 한국인 몇 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당시는 한국에서 일본을 오가는 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공작원들일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방한기도 “우리 뒤의 출항조가 대마도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후에 도쿄에 있을 당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1960. 12. 17.자 조선일보 3면에서는 민의원 현석호 의원이 “재일교포복송저지”를 위해 일본에 공작대원으로 밀송되던 고헌생 수십 명이 현해탄에서 익사했다고 폭로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밀입국이 불법적이라는 문제와 별개로 치안국이 포섭한 밀선은 해로가 험한 현해탄을 건너기에 안전상 문제가 있었던 바, 4차 수송선의 경우 출항해서 얼마 안 가 태풍을 만나 돌아왔다가 다시 출항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국 관계자들이 안전보호의무를 소홀히 하고 공작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항시켜 12명의 공작원이 탄 명성호가 조난사고

25) 현석호(玄錫虎, 1907. 5. 23~1988. 12. 2) 정치가. 6·25전쟁 후 정계에 투신, 자유당 소속 민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제2차 개헌 '사사오입개헌'으로 탈당하고, 새로 발족된 민주당에 입당하여 활약하였다. 4·19혁명 후 제5대 민의원 당선에 이어 내무부장관(1960. 10 13~1960. 11. 20) 제9·11대 국방부장관을 역임하였다.(네이버 백과사전, 한국경찰사 II 참조)

를 당하였다.

나. 생계곤란 상황

1959. 12. 민단의 이인기와 차진이 북송저지를 목적으로 니가타의 적십자 센터를 폭파하려 미수에 그치고 검거된 사건이 발생하고 일본경찰 당국이 북송저지공작대가 일본에 침투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²⁶⁾ 경계가 강화되어 공작활동이 여의치 않았으며, 밀파 교육도 초보적 수준인데다가 구체적인 임무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 도착하였고, 도일 후 공작과 관련한 아무런 지시도 공작금의 송금도 없어 공작원들은 별다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밀항으로 불법입국하였기에 신분을 숨기고 지내는 것조차 힘들었다.

출발 당시 지급받은 3만 엔의 공작비는 한 두 달 후 다 떨어져 일부 공작원의 경우 아는 사람에게 돈을 융통하여 지내거나 취업을 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생계조차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

위 국무회의 안건 경위보고서에는 공작대의 활동상황과 관련하여 “북송저지공작원 침투 정보에 의한 일본관헌의 경계가 심하므로 합법활동이 여의치 않았으나 북송희망자 46세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초자기술자의 집단북송 분열, 국어강습회 개최에 의한 북송저지 설득, 조총련계 공장침투 추진, 조총련 내의 제반 선무공작 등 부진한 성과를 획득하였음”, “당초 입안계획은 1년간의 기간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일본 현지에 전방지휘부를 설치하고 유기적인 공작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 7천만 환만을 영달하고, 그 후 중단된 관계로 공작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보5계장이었던 김○○은 “안착신호를 통해 보고를 하여 온 이들이 두 서너 명 있었으나 활동이 여의치 않아 은거하고 있다는 내용이였다”,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2번 정도 공작금을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김홍윤, 방한기, 전우영, 유찬호는 공작금으로 마산에서 3만 엔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일본에서는 공작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김홍윤은 방한기, 조승배와 함께 ‘쏘니’ 부품 납품업체에 취직하였으며, 최성규는 일본에서 우편으로 공작금이 450불 정도 왔고 액수가 사람마다 달랐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승배는 “일본에 있을 당시²⁷⁾ 한번 일반우편으로 공작금(300~550불, 당시 환율은 1달

26) 1959. 12. 5. 일본 요미우리 신문 7면, 11면 보도 참조.

27) 일본 안착 후 1개월 가량 지난 후였다고 하는 바, 1960년 1월 경인, 2007.1.12. 유선면담시 확인.



리=360원)이 오긴 하였으나, 달리로 지급되어 외환법이 엄격하였던 터라 환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공작금은 천〇〇이라는 치안국 사람이 직접 일본으로 가지고 와서 이를 각 공직원들에게 일반우편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방한기는 “1960년 한일회담이 한창일 때 공작금이 떨어져 주일대표부를 찾아갔다가 유진오, 이호 씨 등을 먼 발치에서 보았다. 주일대표부에서는 민단으로 가보라며 모른 척하였고, 민단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청하자李明 민생국장이 5천 원을 주었다. 녀마 일이라도 하려고 찾아갔으나 거절당하여 생업도 구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최성규는 “당시 오사가 경찰에 근무하던 일본 친구들이 ‘한국에서 수상한 놈들이 건너 왔다는데 혹시 아느냐’고 물은 일이 있다. 이미 우리의 공작정보가 일본경찰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상부로부터 지시도 공작금 송금도 없으니 별다른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고,

유찬호도 “공작금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신분을 숨기고 지내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1960년 봄 아사히신문에 북송저지를 위해 한국공작대가 일본에 잠입하여 각지에서 공작 사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 그 기사를 본 날 아침에 낯선 사람 2명이 찾아와 교육당시에 부여받은 나의 가명 요시무라를 대면서 그의 집이냐고 물었다. 신분이 들쭉났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요시무라상을 아는데 데려올테니 기다리라’고 안심시키고는 고베로 피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배성현 역시 여러 차례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 특수공작원이 잠입하였다는 정보가 보도되면서 경계가 삼엄해져 구체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한동일은 “재일학도의용군 출신으로 당시 오사카에 있었는데, 공작금이 떨어진 이들이 하나 들쭉 찾아와 좀 살피주었다. 그러다 이를 눈치챈 일본 경찰이 찾아와 이들을 오사카 밖으로만 보내면 모른 척 하여주겠다고 하여 서둘러 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낸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

박덕철의 처 이경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박덕철로부터 일본에서 산에 올라가 풀을 뜯어먹고 살 정도로 고생을 하였으며, 경찰에 체포되어 오무라 수용소 등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돌아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일본 경찰에 체포

공직원들이 일본에 도착할 당시 일본에서는 민단 이인기의 니가타 적십자센터 폭발시

도 사건 및 안두희의 북송선 폭파 계획이 드러나고,²⁸⁾ 이 사건 공작대의 밀파도 포착되는 등 일본 공안당국의 경계가 삼엄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작원들은 활동이 여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변상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치안국으로부터는 아무런 지시가 없었으며, 공작에 투입될 예산 조달도 1960. 1.까지로 그쳐,²⁹⁾ 도일 후 공작원들은 공작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거나 한 차례 지급받는데 그쳐 생계까지 위협받았으며, 상황이 이러한에 불구하고 주일대표부는 원조를 요청하는 공작원들을 외면하였다.

공작원들은 밀항자 신분이어서 정상적인 출입국 절차를 통하여 귀환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치안국은 다시 밀선으로 일본을 출항하여 귀환하도록 지시하여 그 과정에서 결국 공작원 24명이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편 황정재는 이들과 별도로 도쿄에서 체포되어 처벌받았는데, 경찰의 고문·가혹행위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본 경찰의 경계상황에서 치안국 측이 철수를 위하여 파견한 요원인 이○○의 활동이 일본경찰에 포착되었고, 1960. 5. 3. 시모노세키에서 이○○가 마련한 무동력선에 승선한 24명 전원이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1960. 7. 7.자 동아일보는 “일경서 24명 체포-북송반대 위해 밀항한 한국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북송반대투쟁관계의 단원이라고 자백한 24명의 한국인들이 5일 밤 한국으로 밀항하다가 하관(下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경찰보도는 신단덕(신은득의 오기)에 의해서 인솔된 동 단원들은 작년 11월 먼저 체포되었던 다른 10여명의 단원들과 함께 일본으로 밀입국하였던 자들이라고 말하였다. 경찰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대한민국 반공청년단원들로부터 선발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4월 혁명 후 귀국하도록 소환되었으나 돌아갈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었다”고 보도하였고,

위 국무회의 안건 경위보고서에는 “동년 3. 6. 일한회담 개최에 수반한 정국변동에 의하여 전원 철수시키라는 명령에 의하여 철수공작원 1명을 현지에 파견하여 철수공작을 실시한 바 제1차로 동년 4. 14. 3명은 철수귀국에 성공하였으나, 동년 5. 3. 일본 하관(下關)에서 제2차 철수공작시 공작원 23명(명단에는 24명 기재)이 승선 출발 직전 일본 관헌에게

28) 주간요미우리 1959.12.

29) 앞의 ‘재일동포북송저지공작관계해결의견’이라는 제하의 1961년 국무회의 안건록 형식의 문건의 별첨보고서에는 가족의 생계지원과 관련하여 “매인당 월 3만원씩 1년간 지불하기로 입안하여 실시하다가 예산부족으로 4292년 10,11,12월 4293년 1월분까지 4개월분만을 지불하고, 그 후로는 미지불증입”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바 공작금의 지급도 이 시기까지만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원 피검되어”라고 적혀 있다.

철수지시 및 그에 따른 이동과정과 관련하여 연락책이었던 조승배는 “4·19 이후 상부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동월 말일경 국제방송을 통하여 철수하라는 명령을 전달받고 시모노세키로 갔다. 공작금이 바닥난 지 오래여서 시모노세키로 가면서도 무척 고생했다”고 진술하였고,

김홍윤과 방한기는 1960. 5. 초(집결일 2일 전 무렵) 연락책인 조승배로부터 철수를 위하여 시모노세키로 오라는 지시를 받고 시모노세키로 가는 기차를 탔으며, 전우영도 4·19 직후 동료 공작원으로부터 철수지시를 전달받고 유상규와 함께 시모노세키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홍윤, 방한기, 전우영, 조승배는 “승선 후 배 밑의 선실에서 출항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라이트가 비춰지면서 나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서 보니 상당히 많은 수의 일본 경찰이 포위하고 있었다. 그 길로 체포되어 각 경찰소로 분산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재판 및 복역

시모노세키 지부에 송치된 공작원들은 1960. 5. 15.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1961. 7. 18. ‘징역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하여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공작원들은 수용된 오무라 수용소와 히로시마 재판정이 원거리여서 재판정에 출석하지 못하고 1961. 12. 28.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재판지연 부담으로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공작원들은 주일대표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승만 정권에서 별인 일이라며 거절당하였고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었다.

일본에서 체포되어 처벌받았던 공작원 허명묵은 검찰공소장과 항소이유서, 출석포기서, 공소신청통지서, 판결통지문 및 강제송환증 원본 등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으며,³⁰⁾ 김홍윤은 판결통지문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³¹⁾

체포되어 처벌받은 공작원 24명(박연규, 안순철(안인철의 가명), 김성욱, 조승배, 김종만, 김복섭, 장정부, 허명묵, 신은득, 김태윤, 심영천(정영달의 가명), 최성규, 이규달, 곽중

30) 이상의 자료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를 통해 사본을 제출받았고, 허명묵이 보유하고 있는 원본은 2006. 11. 7. 면담시 확인하였다.

31) 2006. 12. 17. 진실화해위원회에 사본 제출.

북, 유상규, 방한기, 김석천(김홍윤의 가명), 전우영, 최재판(최재중의 아명), 강병련, 송두경, 배종용(배성현의 가명), 김종범, 박덕길(박덕철의 가명))의 혐의 사실은, 1959. 11. 12. 경부터 12. 26.경 사이에 6회에 걸쳐 한국 항구에서 선박에 승선 출항하여 불법으로 일본에 입국하였으며,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여권에 출국증명을 받지 않고 한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1960. 5. 3. 밤 시모노세키에서 승선했다는 것이다.

야마구치 지방검찰청 시모노세키 지부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본건 밀입국의 목적은 인도를 무시한 정치적 모략에 근거한 비밀활동을 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간섭하고 일본 국내를 교란하기 위해 저지른 대단히 중대, 악질의 집단적 범행이다”, “피고인들의 밀입국 목적은 일본 정부에서 인도적 견지에서 실시한 재류조선인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북조선 귀환을 희망하는 자를 송환한다고 하는 시책을 저지하려는 상당히 비인도적 모략을 수행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감행된 것이고, 수십 명에 이르는 비밀공작원 피고인들의 이러한 의도하에 밀항 잠입해 온 사실 자체에 있어서, 본 국민 및 재일남북조선인에게 끼친 사회불안은 실로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공작원들의 신변보호 내지 사후 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시의 정보5계장 김문석은 “나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퇴직하였고, 민주당 정권에게 공작관련 업무를 인계해 주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승만 정권이 벌인 일이고 자신들은 모르는 것이라며 공작사업 자체와 공작원들을 방치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조승배는 민단을 통하여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주일대표부에서 “이승만 정부에서 보낸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관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절하여 일체의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방한기는 “우리를 변호해 주던 국선변호사를 통해 주일대표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김홍윤은 “폭탄 테러 시도로 체포된 민단의 이인기는 주일공관에서 선임하여 준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아 불구속수사를 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며,

방한기는 “조사중 북송저지공작을 위해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일본의 북송정책이 비인도적인 것임을 주장하였는데 경찰은 우이동에서 지낸 일까지 이미 다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전우영은 “경찰서에서 밤새 취조를 당하였고, 처음에는 무조건 부정하였으나 누군가가 다 이야기를 하여서 나중에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승배는 “낮에는 방치하였다가 밤마다 불러서 잠을 재우지 않고 신문했을 뿐만 아니라 신문절차의 진행시에는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조승배는 “담당검사가 공직원들에게 엄청난 중형을 주려고 하였지만 당시 일본에는 첩보관계 처벌규정이 없어 출입국관리법과 국민보건법 위반만이 문제되었다”고 하였고, 최성규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형사들이 변호사에게 치안국에서 복송저지공작 관계로 왔기 때문에 형을 높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고 하였으며, 김홍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궤석재판으로 진행되었다”고 하고, 방한기는 “대법원에 상고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어 그냥 복역을 마치고 돌아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정권 관계자들의 불법적인 공작추진으로 인하여 공직원들이 체포되어 처벌받게 된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외면을 당하고 공직원들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심에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 귀환 상황

현재 생존이 확인된 공직원 김홍윤, 조승배, 방한기, 전우영, 최성규, 박진우, 유찬호, 허명묵, 김성욱, 신상봉, 배성현 등 11명이 있으나, 그동안 정부기관에서는 이 사건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거듭하였다.³²⁾

공직원 66명 중 조난당한 12명, 1960년 일본입국에 실패하여 귀환한 10명과 1961년 복역 후 강제송환된 25명(도쿄에서 체포된 1명 포함) 등 47명 외 공직원 19명은 개별적으로 귀환하거나 일본에 잔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후에 주민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

조승배는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복역중이던 24명의 공직원들은 1961. 가석방되어³³⁾ 오무라 수용소로 이동된 후 재일동포강제송환절차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고,

김홍윤은 “1961. 6. 10.경 정영달을 비롯한 8명과 제1진으로 부산을 통해 돌아왔는데, 한 갑석 총경이 우리를 맞은 후 영도경찰서 수상검문소로 데려가 공작보고서를 쓰도록 한 후 교통비조로 몇만원을 주면서 ‘집에 기다리면 경찰 임용의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방한기는 “출소하는 날 주일대표부의 엄공사가 찾아와 ‘고생이 많았다’고 하였고, 오무라 수용소에서 대기하다 송환되어 부산으로 왔다. 치안국 사람이 나와서 수속을 밟아주고

32) 신청인 제출자료 ; 1997. 12. 14. 경찰청 회신문(보일 63700-2539) ; 2000. 1. 26. 경찰청 회신문(보일 63700-111)

33) 허명묵이 보유한 나가사키 형무소 가출소 증명서로 1961. 5. 30. 가출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는 ‘수고했다’고 하면서 만원을 여비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배성현은 “체포되어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는데 1961년 봄 주일 대표부의 엄공사라는 이가 와 자비출국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강제송환선을 타고 부산으로 왔을 때 경찰이 나와 출발시 가지고 간 공작금의 용도에 대해 보고서를 쓰도록 하고 귀가시켰을 뿐, 이후 어떠한 사후 조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외에 전우영, 최성규 등도 같은 절차로 귀환하였으며, 귀환 당시 치안국 등의 관계자가 나와 교통비조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며,

박진우는 고베항 상륙에 실패한 후 귀환하여 치안국 정보5계에서 본 공작관련 문건들을 정리하였다고 한다.

위 24명과 달리 유찬호는 1960. 10.경 일본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친구의 도움으로 입국 위반 문제만 조사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고 석방된 후 일본에 남아 생업에 종사하다 1997년경에 귀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김복섭의 처 권분두는 “1959년 치안국에서 주관하는 재일교포 북송반대운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6개월 정도 일본에 다녀올 것이며, 봉급이 집으로 송금 될 것이라 하고는 나간 남편은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고, 봉급도 딱 3개월 송금된 후로는 전혀 지급된 바 없다. 아는 이들로부터 남편이 일본에서 체포되어 형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안국에 찾아가 생활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조치가 없었고, 집으로 돌아갈 차비조차 없는 것을 알고 차비 정도 주었을 뿐이었다. 1961년에 귀국한 남편은 일본 경찰에서 고문을 많이 당하여 팔목 양쪽에 깊숙한 상처가 남아 있었고, 몸이 좋지 않아 취업도 어렵사리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인태의 딸 정은주는 “국가의 일로 일본에 갔다가 고생 끝에 한쪽 다리에 장애를 입은 상태로 돌아왔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여 평생 단간방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원래 유능한 분이었는데 일본에 가서 고생하다 정국이 바뀌면서 버림받게 된 것이고 일본에서 돌아올 때도 매우 비참하게 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³⁴⁾

이상과 같이 공작원들은 밀항의 방법으로 일본에 상륙한 불법입국자의 신분이어서 대부분 합법적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 당국의 강제송환절차에 따라 귀환하였다.

34)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된 급여열람표 사본의 귀환일자 상 정인태는 1963. 7. 26. 귀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정부의 약속이행 여부

1) 보상금 지급 및 사망통보

치안국이 출항시킨 밀선은 해로가 험한 현해탄을 건너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치안국이 안전보호 의무를 게을리하여 명성호에 승선하였던 12명의 공무원이 조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일본에 도착한 공무원들의 경우 생계에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5명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복역까지 하였다.

정부는 조난공무원들의 유가족에게 보상금으로 각각 105만 원을 지급하였고, 귀환공무원들에게는 각각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³⁵⁾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시 김형근의 처 박일순은 “남편이 가고 2, 3년 지나서 재일학도의 용군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정착금이 나온다고 하여 갔더니 사망한 사람은 돈을 더 준다고 했다. 그저 사망자 정착금 지급대상이라고 하면서 돈만 주었지 이렇다 저렇다 설명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³⁶⁾

조난당한 이상진의 처 김인식은 “1959. 8. 18. 취직을 한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나간 남편의 생사를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여 아직 그 호적을 말소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세 살이었던 딸을 홀로 키우며 모진 풍파를 겪어야 했다”고 하며, 지금도 단칸방에서 어렵사리 살고 있고 이상진의 딸 이태임은 홀어머니 밑에서 교육의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등 아버지 없는 서러운 세월을 살아왔다.³⁷⁾

2) 가족들의 생계보장

재일학도의용군 대장이었던 진성룡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치안국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신분보장, 잔류가족의 생계보장(월 3만 원 급여), 임무완수 후 직장보장(경찰관 임용)의 약속을 받았으며, 특히 가족의 생계보장과 관련하여 가족에게 월 3만 원의 월급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가족들은 생계지원을 받은 바가 전혀 없거나, 생계지원도 1960년에 들어서는 예산이 없어 조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찬호는 “가족에게 매월 월급을 부쳐준다고 걱정말라고 했는데, 받은 것이 없었다”고

35) 내무부 치안국 회신문(내치안 87,018)

36) 김형근의 제적 등본상에는 ‘1959. 12. 21. 경상남도 남해 해상에서 목선 30톤 공무수행중 익사’라고 하여 처 박일순이 사망신고를 하였으나, 박일순은 사망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한다.

37) 이상 2001.8.23. SBS 뉴스추적 방영 내용 : 2007. 3. 9.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시 이상진의 친구 이식운은 김인식을 설득하여 2002. 1. 25. 사망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 이상진의 제적 등본상 1959. 12. 21. 경 일본 큐슈 근해에서 사망한 것으로 하여 2002. 1. 25. 사망신고됨을 확인하였다.

하며, 허명묵도 “공작원으로 선발될 당시에는 가족의 생계를 지원해 줄 것이니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하였으나 실제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고 하였으며,

최성규도 “원래 치안국에서 가족에게 월급을 부쳐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혀 받은 게 없었고 아내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들을 데리고 처가에 얹혀살았다. 정부에서는 지급했는데 중간에 누가 가로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알 수 없는 노릇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박진우도 “치안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월 얼마의 월급을 주겠다고 했지만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승배는 “실제 월급은 두어 달 정도만 지급되었다.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기 전에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조난공작원 김형근의 처 박일순은 “처음 두 세 달 정도 사서함으로 돈이 들어왔다. 남편이 가기 전에 월급이 나올 것이니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돈이었던 모양이다. 그리고는 돈이 안 왔고 할 수 없이 직장을 다녀야 했기에 아들과 함께 친정에서 살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경찰관 임용

공작원들에 대하여 가족의 생계지원과 경찰관 임용 약속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진성룡 및 생존공작원들의 진술과 치안국 직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데, 1960. 2. 6.경 귀환한 박진우, 김덕장, 진중근, 손진석, 김종식 등만이 경찰로 채용되었고, 그 외에는 5·16 이후 당초의 약속과 달리 경찰관으로 임용되지 못했다.

정보5계장이었던 김○○은 “치안국에서 이후 돌아오면 순경³⁸⁾으로 특채하여 준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고,

배성현은 경찰관시험합격자 출신으로 “매월 경위급의 월급과 귀환 후의 경찰관임용을 보장하여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했으며, 최성규도 “경찰관으로 근무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이후에 시험을 쳐 전매청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박진우는 “치안5계에서 이동규, 김덕장, 진중근 이렇게 우리 넷을 불러 의향을 물었는데, 이동규는 사퇴하겠다고 했고, 김덕장은 전라남도 경찰국으로,³⁹⁾ 진중근은 경상북도 도경으로⁴⁰⁾ 발령이 났다. 당시 박주선⁴¹⁾이 치안국장이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 대담도 했다.

38) 채용 직급과 관련하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작원들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다.

39) 2007.1.12. 경찰청 인사과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1960년 나주경찰서에 순경으로 채용되었다.



원래 조장급은 경위를 준다고 했는데 순경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김홍윤의 1962. 1. 청원에 대한 치안국의 회신문 사본에는 “1. 과거기록을 검토하였으나 임무수행귀환 후 경찰관으로 기용한다는 명문이 없고, 2. 설사 명문이 있다 하더라도 정실 인사의 구약을 일소하기 위하여 일체 공무원 채용은 시험에 의하는 것이 혁명정부의 방침 이므로 무시험 기용의 가망은 없음”이라는 임용요구 거부의 내용이 적혀있다.⁴²⁾ 방한기 역시 “이후에 사람들에게 연락해 박○○도 만나고 치안국에 민원도 넣어 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당시 이소동 장군이 치안국장이었는데 어렵다는 답변만을 받았을 뿐이었다”고 진술했다.

사. 소결

이승만 정권 관계자들의 과실로 무리하게 출항시켜 조난사고를 당하고, 밀파 후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 공작원들이 생계곤란을 겪었으며, 일부 공작원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받고 복역하는 등의 고초를 겪었던 사실, 안전 귀환이 보장되지 않은 사실,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지급 약속 및 귀환 후 경찰임용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해구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VI. 결 론

1. 진실규명

이 사건은 1959년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북송저지공작을 전개키로 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해 일본 현지에 공작원을 파견할 예산을 책정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의 승인과 내무부장관 관할하에 치안국이 추진하여 실행에 옮겨졌으나, 일본에 밀항의 방법으로 밀파 후 방치되었다.

사건발생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이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해 내무부 치안국 주관으로 재일동포북송저지를 목적으로 공작원을 선발하여 교육시켰으며,

선발과정에서 일부 경찰시험응시자들에 대하여는 공작원 임무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려 주지 않고 경찰에 임용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소집장소에 출석시킨 다음 공작임무를 수행

40) 현재 경찰청 인사기록상 확인 불가. 전산화되지 못하여 근무지를 상세히 알아야 확인이 가능함.

41) 경찰청 인사기록 및 한국경찰사 II의 명단 확인 결과 '박주식'으로 확인

42) 내무부 치안국 청원서에 대한 회보, 내치정 제2,952호, 1962. 2. 6. 신청인 제출자료.

한다는 국가기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임의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강압적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우이동 훈련장소로 이동시켰으며,

학도의용군 출신에 대하여는 동지회를 통해 공작활동을 할 요원을 선발한다고 막연한 내용만을 알리거나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선발하면서, 그 과정에서 임무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국가기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식의 기망 또는 강압적 방법으로 우이동 훈련장소로 이동시켰고,

우이동 훈련장소에서는 천막을 치고 합숙시키면서 1개월간 외부와 통제된 상태에서 재일동포 설득작업, 조총련 간부 납치 등 불법적 방법에 의한 공작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비밀교육을 하였던 바,

기망과 강제적 상황에서 외부와 차단한 채 공작원을 선발하고, 교육장소로 이동시켜 교육을 받게 한 후, 위험한 밀항선에 승선시킨 것은 피해자인 신청인 등 공작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피해자 가족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작활동을 행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공작원들을 일본으로 밀파한 행위는 권력남용에 해당하며, 헌법상 국제평화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건발생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공작원들을 무리하게 출항시켜 조난사고를 당하고, 밀파 후 공작원들이 생계곤란을 겪었으며, 일부 공작원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받고 복역하는 등의 고초를 겪었고, 일부 안전하게 귀환하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권고

국가는 사건발생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공작원들을 강압적으로 공작원으로 선발하여 교육을 시키고 밀파시키는 과정에서 행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가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